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하며, "동지역"을 "시지역"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지정을 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헌 행	개 정 안
<p>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신 설></p>	<p>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현행과같음)</p> <p>②.....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p>
<p>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 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 토지 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p> <p>.....</p> <p>.....</p> <p>.....</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1. ~ 6. (생략)</p> <p><신설></p> <p>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동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p> <p>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p> <p>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p> <p><신설></p> <p><신설></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 주택시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p>	<p>1. ~ 6. (현행과 같음)</p> <p>7.8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을 포함한다)로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시지역.....</p> <p>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p> <p>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p> <p>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p> <p>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현행	개정안
<p>4.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hr/> <p>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0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hr/> <p>제23조(시행규칙)</p> <p>.....</p>

< 별표1 >

항		행	개 정 안
급 수		상 이 등 급 분 류 표	<p><삭 제></p>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합호 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 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